2026년도 제1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6. 6. 29. 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설지혜(분과위원장), 김정숙, 이동국, 홍승기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6-17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박현주 전문위원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82건(안건번호 제2026-110325호~11170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6-110325호~제2026-110362호(순번 1번~38번)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안으로, 해외 침해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불법복제물 관련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6-110363호(순번 39번)은 저작권자 등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데 사용되는 스트리밍용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안건번호 제2026-110364호~제2026-111706호(순번 40번~1382번)은 모두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o 제2호: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

-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33개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 여부(안건번호 제2026-481호~513호)

- 회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긴급차단을 명령한 33개 사이트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를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설지혜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1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6-17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설지혜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 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의견 없음.

- 박현주 전문위원: 저작물명, 사이트명이나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 등은 비식별 처리하도록 하겠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설지혜 분과위원장: 위원 모두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등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제척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오늘부터 배부해 드린 신청서 해당 부분에 표시를 부탁드림.

- 참석위원 전원: 확인하였으며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설지혜 분과위원장: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 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082개의 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로 총 1,382건의 안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1번 게시 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1번~3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커뮤니티 사이트 ●●●●●●에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인 △△△로 연결되는 링크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순번 1번~38번은 ●●●●●●의 △△△△△△에 게시된 게시물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해외사이트인 △△△로 접속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내 링크를 클릭하면 해외 저작권 침해사이트인 △△△에 접속되거나, △△△△△△△△△△△△ 페이지를 경유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에 접속됨.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의 민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로의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판단할 수 있음.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원천게시물에 직접 시정권고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국내 온라인서비스에 소재하는바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종합하자면, 순번 1번~38번은 해외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며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아니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 및 제2호에 따른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경우,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

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조 제1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위원님들은 순번 1번~38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38번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만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39번 게시 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3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쇼핑 플랫폼에서 저작권자,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본건 기기 판매행위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조 제1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위원님들은 순번 39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9번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만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40번~138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영상, 출판 등을 블로그,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드라마 '내일도 출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533번 '내일도 출근!'은 2026년 6월부터 방영 중인 국내 드라마로, TVING 등에서 서비스 중임. 웹하드에서 2개 회를 30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영화 '현상수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105번 '현상수배'는 2026년 6월 개봉한 국내영화로 현재 극장 상영 중임. Wavve 등에서 서비스 중으로, 웹하드에서 39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순번 40번~1382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설지혜 분과위원장: 위원님들은 순번 40번~138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0번~1382번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만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6-110325호~111706호(순번 1번~1382번)은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

- 설지혜 분과위원장: 2호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이번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법 제133조의4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후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통지하였기에 심의를 진행하는 안건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차단 명령 조치를 시행한 사이트와 실질

적으로 동일한 아래 33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4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 후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였음.
(긴급차단 조치 사이트 안건 요약표를 제시하면서) 상정된 안건인 33개 사이트 주요 정보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전송되는 복제물, 정보 또는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심의 대상 사이트 내에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심의 대상 사이트에 대한 주요 권리자들의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확인됨. 또한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다수의 불법복제물등을 자체 서버 또는 별도의 저장서버에 저장한 후 게시판, 뷰어, 재생 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이를 조회, 재생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에 대한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불법복제물등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의 대상 사이트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아울러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차단 등 제재 조치에 대응하여 URL 주소 중 일부 숫자 등을 변경한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래 33개 사이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제133조의4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하였거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한 이후 URL의 숫자 부분 등을 변경하여 재운영되고 있음.
(접속차단 시정명령(긴급차단) 또는 시정권고 사이트 목록을 제시하

면서) 해당 목록은 문체부가 긴급차단 명령을 하였거나 보호원이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한 사이트이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가결된 사이트임.

채증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나.항과 같은 비교에 의하면 심의대상 사이트는 문체부에서 긴급차단을 명령하였거나 보호원에서 접속차단을 시정권고한 사이트 33개 사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체사이트로 인정할 수 있는데(이에 관하여는 아래 나.에서 다시 한번 따져봄), 여기에 아래 2)와 같이 주요 권리자들에 대하여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여전히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사이트 전체가 기존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이트 전체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른 콘텐츠 등 불법복제물에 관련된 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다음은 복제·전송자에게 복제물등의 복제·전송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음.

(주요 권리자들의 이용허락 확인 내역을 제시하면서) 해당 표와 같이 심의대상 안건을 포함한 침해 사이트상 콘텐츠들의 주요 권리자들에게 공문 등으로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았음.

심의대상 사이트의 기재 내용, 콘텐츠 제공 방식 및 이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함. 따라서 심의대상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의 이용허락 등 정당한 권원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로 판단됨.

저작권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

부에 대해 보고드리겠음. 해당 사이트들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위와 같이 문체부에서 긴급차단을 최초 명령(2026. 5. 11.)한 34개 사이트 또는 그 후 대체사이트로 인정되어 긴급차단을 명령한 사이트 및 보호원에서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한 사이트 중 URL 숫자부분 등을 변경한 대체 사이트들임. 따라서 그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저작권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 지속적으로 URL 숫자부분 등이 업데이트 되고 있어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차단할 필요도 있음.

또한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웹툰, 영화, 드라마 등 상업적 저작물들을 아무런 권한도 없이 스트리밍 또는 링크나 다운로드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저작권자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가 삭제 통지를 하려고 하여도 통지를 수령할 주소를 사이트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저작권자로서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저작권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접속차단 사이트와 심의대상 사이트의 동일성 확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심의대상 사이트들을 통하여 접속되는 사이트는 문체부의 긴급차단 명령 대상 사이트와 보호원의 접속차단 시정권고 사이트 또는 방미심위의 접속차단 시정요구로 차단된 사이트와 도메인명, 사이트 제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일부 심의대상 사이트의 일부 게시물 정보의 경우 차단된 사이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부 접속차단 사이트의 경우 별도 안내 페이지·팝업창 등을 통해 현재 또는 향후 대체사이트의 URL을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

려하면, 이미 접속 차단된 사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됨. 이와 같은 대체사이트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기존 접속차단 효과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종합하면 심의대상 사이트 33개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긴급차단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제2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설지혜 분과위원장: 추가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다면 순번 1번 내지 33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긴급차단을 명령한 33개 사이트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를 가결함.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6-481호~513호(순번 1번~33번)의 접속차단 명령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설지혜 분과위원장이 제1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6년 제1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7. 6.

분과위원장 설지혜

위원 김정숙

위원 이동국

위원 홍승기